2012. 04. 25.

기 타 안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384	(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 사립 화심어린이집 신축 2)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 3)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4) 공공하수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	
1385	(2)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2012.04.09	2012.04.10	2012.04.16	2012.04.16	회 계 과 장
(2)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2012.04.09	2012.04.10	2012.04.16	2012.04.16	세 정 과 장

2. 제안설명요지

(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4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1,805㎡, 건물 214.5㎡(지상 1층)

-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등

○ 사 업 비 : 516,330천원(국비 198,165, 도비 99,083, 시비 219,082)

- 토지매입비 : 120,000천원
- 건물신축비 : 371,830천원
- 설계용역 및 시설부대비 등 : 24,50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의 필요성

○ 농촌지역에 운영중인 국공립 화심어린이집이 2012년 하반기 신니~노은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에 포함되어 신축 이전 필요.

○ 어린이집 이전 신축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2)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218-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16,110㎡, 건물 100㎡(지상 1층)
- 축구장(인조잔디), 테니스장, 주차장, 관리동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800백만원
- 다목적 운동장 조성
·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 : 1,030백만원
· 관리동 신축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

□ 사업의 필요성

○ 주덕읍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지역민의 상대적 소외감이 크고, 인근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운동장 조성으로 지역 간 체육균형발전 도모

3)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산 39-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32,702㎡, 건물 200㎡(지상 1층)
-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산책로, 주차장, 관리동 등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400백만원
- 체육공원 조성
·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진입도로 등 : 1,760백만원
· 관리동 신축 : 3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 사업의 필요성

- ○ 소외지역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균형발전에 기여

4) 공공하수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

□ 사업개요

① 충주 총인처리시설 설치

- ○ 위　　치 : 충주시 봉방동 650-3번지 (충주하수처리장 내)
- ○ 사업규모 : 연면적 532.62㎡
- ○ 시설용량 : 75,000톤 / 일
- ○ 사 업 비 : 9,572백만원
- ○ 사업기간 : 2012년

② 주덕 총인처리시설 설치

- ○ 위　　치 :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323번지 (주덕하수처리장 내)
- ○ 사업규모 : 연면적 59.11㎡
- ○ 시설용량 : 4,000톤 / 일
- ○ 사 업 비 : 1,597백만원
-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의 필요성

- ○ 충주하수처리장과 주덕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기준에 의한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 ○ 조류 등의 성장제한 인자인 총인(T-P)의 제거로 남한강 수질개선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도모

(2)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1조 및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야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동일함(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나. 새롭게 추가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

○ 산척면 송강리 일부지역 ⇒ 대신산업단지

○ 수안보면 온천리 일부지역 ⇒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 수안보면 안보리 일부지역 ⇒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다.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대상에서 미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

○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일부지역 ⇒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

1)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

○ 본 건은 신니면 화석리에서 운영 중인 시립 화심어린이집이 신니~노은간 도로 확포장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노은면 연하리 451번지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전하고자 사항으로

○ 현재 화심어린이집은 신니면과 노은면 등 아동 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 당초 신축 예정지는 신니면 화석리 화심마을의 인근부지인 화심마을회의 부지를 활용하려 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여러 사유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노은면 연하리 45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임

○ 시립어린이집 신축 이전을 위해 2012년 당초예산에 39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토지매입비 12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도로 개설에 따라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시립어린이집이 신니면 화석리에서 노은면 연하리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화심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신니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

○ 본 건은 지역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덕읍 삼청리 218-8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체육운동기구, 관리동 등 시설을 갖춘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주덕중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고 지목은 대부분 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인근 읍소재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주민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덕읍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다목적운동장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 본 건은 소외지역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앙성면 용대리 산 39-3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산책로, 주차장, 관리동 등 시설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지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필요 하다고 사료되나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공공하수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

○ 본 건은 2012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주하수처리장과 주덕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조류발생 억제와 부영양화 방지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하수도시설의 선진화된 종합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 충주하수처리장에는 사업비 9,572백만원으로 1일 7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주덕하수처리장에는 사업비 1,597백만원으로 1일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본 사업을 통해 남한강 수질개선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987

(2)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 본 건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에 포함시키고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미대상 지역으로 고시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금번에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변경고시 면적은 산척면 송강리 대신산업단지 등 총 189,177㎡이며, 제외되는 지역은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26,669㎡임

○ 재산세 과세특례 지역이란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계획세 대체를 위한 재산세 특례세율로

○ 2012년도 재산세 부과시 재산세 특례세율(재산세액+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을 적용하여 부과할 예정임

○ 검토결과 본 건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질의 : 체육시설은 한 군데 집중시켜야 하는데 이곳저곳에 설치한다면 25개 읍·면·동에 다 설치할 것인가?

○답변 : 지역별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음.

▶질의 : 화심어린이집을 옮기는데 신니면에서는 반발이 없겠는가?

○답변 : 문제가 없을 것임.

(2)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 원안가결

1)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
2)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
3)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4) 공공하수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

(2)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 원안가결